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54
----------	-----

2021. 3. 23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허창원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3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3월 12일

-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허창원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, 사용료 및 위·수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노인복지관의 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이용대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노인복지관 수탁자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)
- 노인복지관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노인복지관”이라 함)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며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, 1998년 4월 17일 개관 시점부터 2005년 1월 12일까지는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에서, 2005년 1월 13일부터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학교법인 충청학원에서 위탁 운영 중임.
-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의 업무, 사용료 및 위·수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3조는 노인복지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 - 본 조항은 노인복지관의 주요업무가 노인 욕구(needs)의 변화에 따라

확장되고, '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'를 통해 사업 구분이 구체화된 것을 감안해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현행	개정안
제3조(사업 및 기능) 1. 노인전문상담 및 고용지원사업 2. 노인평생교육 및 복지후생사업 3.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의료 재활 사업 4. 취미생활,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 여가증진 사업 5.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	제3조(업무) 1. 상담 및 정보제공 2.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3. 건강생활 지원 4. 노년 사회화 교육 5. 지역자원 개발 및 복지 연계 6.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7. 고용 및 소득지원 8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

○ 안 제5조는 해당 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해당 범위 외에 '노인복지 관련 기관·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'를 추가로 포함시킴.

- 노인복지관 시설은 충청북도의 행정재산으로 충청북도 노인복지사업의 광역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유일한 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, 본 개정안에서 '노인복지 관련 기관·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'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6조는 노인복지관 시설의 관리·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.

- 현행 조례에서는 공유재산(건물, 토지 등)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위탁 사항을 규정하여 위탁 기간도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
- 본 시설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며,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

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인 바,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본 법을 적용해야 할 것임.

- 이에,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 선정에 있어 '공개모집'방식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고,
-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중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인용 문구를 삭제하며,
- 위탁계약기간도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하고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타당함.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위탁운영 등)</p> <p>② <u>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,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</u> 다만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③ <u>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,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</u></p>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○ 안 제8조는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1항에서도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에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8조(고용승계)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○ 안 제9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- 현행 조례의 '도지사는 조사·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'는 임의규정을, 본 조례안에서는 '~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'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였음.

현행	개정안
제8조(조사 또는 검사 등)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<u>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</u>	제9조(지도·감독 등)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등 <u>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
○ 안 제10조는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- 이는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3항과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8조를 준용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□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8조(위탁의 취소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
2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

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○ 안 [별표] 사용료 기준표(안 제4조제3항 관련)에서는, 노인복지관의 식당 메뉴 가격을 삭제하였음.

※ [별표] 삭제 내용: 정식 2,500원, 국수 1,500원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1조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여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식당 메뉴를 공공시설의 사용료로 보기 어렵고, 가격 또한 현실과 괴리가 있는 바, 이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,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, 사용료 및 위·수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없음.

<참고자료>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현황

□ **일반현황**

- 근거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 ~ 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)
- 소재지 :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 (사직1동)
- 시설규모 : 부지 11,985㎡ / 건축 4,023.78㎡ (지하1층, 지상3층)
- 운영주체 : 학교법인 충청학원 (이사장 박규일, 관장 김준환)
- ※ 위수탁 계약 (5년, 공개모집) : 2017. 1. 13 ~ 2022. 1. 12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'98. 4. 17일 개관 ('97. 12. 14 준공) ▷ 도 노인회 위탁 : 2년 주기 3회 (수의계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차 ~ 3차 : '99. 1. 13 ~ '05. 1. 12 (6년) ▷ 학교법인 충청학원 위탁 : 3년 주기 3회 (공개모집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차 ~ 7차 : '05. 1. 13 ~ '17. 1. 12 (12년)
--

- 이용현황 : 등록 회원수 9,554명, 1일 평균 이용인원 1,000여명
- 종사인원 : 24명(비상근 1, 상근 23) ※ 비상근(무보수) : 관장 김준환

상 근 : 23 (정규직 13, 무기계약직 3, 계약직 7)															
사무국 : 2		총무과 : 13 (정규 6, 무기 3, 계약 4)								복지과 : 8 (정규 5, 계약 3)					
부관장	부장	과장	팀장	사회복지사	영양사	관리기사	조리사(무기)	환경미화원(무기)	노인종합복지관(계약)	팀장	대리	사회복지사	상담사(계약)	노인일자리선담(계약)	돌봄코디네이터(계약)
1	1	1	1	2	1	1	2	1	4	1	1	3	1	1	1

□ **산출내역**

- '20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% 적용
 - 급여(473,139천원), 제수당(61,383천원), 퇴직적립금(45,393천원), 사회보험부담금(55,094천원) 등

□ **주요사업 : 11개 사업, 173개 프로그램**

광역중심 도 노인복지관 역할강화	지역중심 노인복지관 역할수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상담·정보제공 및 정서·사회생활지원사업(7개) ▷ 위기 및 독거노인지원사업(21개) ▷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(24개) ▷ 노인권익증진사업(6개) ▷ 지역복지연계사업(3개) ▷ 지역복지협력사업(4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평생교육지원사업(48개) ▷ 취미여가지원사업(14개) ▷ 사회참여지원사업(12개) ▷ 건강증진지원사업(16개) ▷ 지역자원개발사업(18개)
6개 사업 65개 프로그램	5개 사업 108개 프로그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(허창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3월 3일
발 의 자 : 허창원, 박형용, 이숙애,
이상욱, 이의영, 장선배
송미애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, 사용료 및 위·수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복지관의 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나. 이용대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다.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라. 노인복지관 수탁자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)
- 마. 노인복지관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12호
- 다. 협의 :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
- 라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, 교양, 여가활동,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노인복지관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(사직동)에 둔다.

제3조(업무) 노인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담 및 정보제공
2.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
3. 건강생활 지원
4. 노년 사회화 교육
5. 지역자원 개발 및 복지 연계
6.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
7. 고용 및 소득지원
8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

제4조(이용대상 및 사용료)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. 다만, 이용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강당, 교육실, 회의실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가

할 수 있다.

③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료의 감면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
3. 노인복지 관련 기관·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
4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,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충청북도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.

2. 수탁자는 수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,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3.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 등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
4.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·변경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5.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8조(고용승계)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 등)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관한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
2.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, 각종 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익사업)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자체 운영규정)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사용료 기준표 (제4조제3항 관련)

구 분	기 준	평일 사용료 (이 용 료)	비 고
강 당	주간 1회 2시간	3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토. 일. 공휴일 및 냉·난방 시는 평일요금의 20% 가산· 야간(18시 이후)은 주간 사용료의 20% 가산
교육실 회의실		20,000원	

관계법령 발췌

□ 노인복지법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13.>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6. 7., 2018. 3. 13.>

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“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“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 3. 7.,

2008. 11. 5., 2020. 1. 3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2. 위탁계약기간
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8조(위탁의 취소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

가 생긴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
2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

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,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○ 첨부제외 사유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, 사용료 징수 및 위·수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 의안 내용에 따른 의무적·임의적 비용발생에 해당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